

	<h1>가정통신문</h1> <p>세계와 소통하는 창의융합형 민주시민 육성</p>	2022년 12월 05일 (월)	
		담당자	교무부(01 * *)
		담당전화	070-7842-0619

전북 남원시 낙현길 17-14 / http://www.seojin.hs.kr / 063-631-1333(교무실) 063-631-1331(행정실)
남원서진여고 학교규칙(학칙) 제6장 및 일부 개정 안내문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규칙 제·개정시 학교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과-14382(2022. 9. 20.) 공문에 의거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교규칙에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이 개정되어 학교규칙 제6장(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신규 제정함과 더불어 일부 용어를 실정에 맞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학교규칙 제6장 신규 제정 및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학부모님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오니 첨부된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의견을 작성해 주십시오. 자세한 학칙 내용은 학교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하신 의견은 아래 [별첨]을 참조하시어 12월 9일 오전까지 학생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 개정 전 후 대조표

2022. 12. 05.

남원서진여자고등학교장



[별첨]

개정 전 후 대조표

개정전	개정후
제8조(학급 편제) 학급편성은 같은 학년, 같은 학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개 학년 이상의 학생을 1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다. 또한, 교육감이 정하는 특수 학급을 편성할 수 있다.	제8조(학급 편제) 학급편성은 같은 학년으로 하되, 선택군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개 학년 이상의 학생을 1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다. 또한, 교육감이 정하는 특수 학급을 편성할 수 있다.
내용 없음	(신규 삽입 내용) 제6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제26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①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27조(학업중단숙려제) ①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 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법(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이후 일련번호 수정
제39조(학생회의 조직) ① 학생회는 학급 학생회, 전체 학생회로 구분하여, 각각 남원서진여자고등학교 학급학생회(이하 학생회), 남원서진여자고등학교 학생회 또는 총학생회(이하 학생회)라 한다.	제41조(학생회의 조직) ① 학생회는 학급 학생회, 학교 학생회로 구분하여, 각각 남원서진여자고등학교 학급학생회(이하 학생회), 남원서진여자고등학교 학생회 또는 총학생회(이하 학생회)라 한다.
제40조(학생회의 운영) ② 학생회 활동은 학생지도위원의 지도를 받아 활동하도록 한다.	제42조(학생회의 운영) ② 학생회 활동은 학생인성인권부장의 지도를 받아 활동하도록 한다.
제44조(결석의 종류)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②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 : 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미인정 어학연수 등	제46조(결석의 종류)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② 미인정으로 결석한 경우 : 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미인정 어학연수 등
제45조(학교폭력전담기구의 구성·운영) ② 학교폭력전담기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제47조(학교폭력전담기구의 구성·운영) ② 학교폭력전담기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내용 없음	(내용 삽입) 제47조-②-8. 학교장의 자체해결 심의
제46조(차별금지) ② 학교장은 특정 수업이나 실험 . 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차별금지) ② 학교장은 특정 수업이나 실험 . 실습, 현장견학, 현장체험학습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절취선 >

□ 학생과 학부모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해당란에 직접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체	기타 의견
학생	
학부모	

2022년 12월 일

학부모 성명 : (인)
학 生 성명 :